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551
----------	-----

2025. 8. 19.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8. 14. 황영각 의원 등 6인

나. 상정의결

-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(2025. 8. 19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: 대표발의자 황영각 의원)

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을 통해 양 의회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, 의정·경제·문화·민간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두 지자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강남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 기초의회 간 친선결연 체결
- 친선결연 협약서(안)

4. 제안경위 및 추진사항

- 2024. 8. 16 : 양 의회 의장 간 친선교류 강화 논의
- 2024. 11. 11 : 양 의회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 도모
- 2025. 3. 24 : 연천군의의회 교류 관련 의향서 전달
- 2025. 6. 10: 구의회 의상단 회의에서 친선결연 추진 결정

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최서용)

가. 결의안 제안 취지

-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의회와 경기도 연천군의의회 간 친선결연을 통해 의정·경제·문화·민간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황영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임.

나. 검토내용

- 연천군의의회 의원 정수는 7명(의장 김미경)이며 의장단과 운영위원회,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며 따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지는 않음.
사무 조직으로 사무과장 아래 약 20명의 인원을 전문위원, 의정팀과 의사정책팀으로 두고 있음.
- 2024년 11월 8일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가 시행됨에 따라 강남구의의회와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.
- 동 조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‘인구, 면적,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’, ‘산업, 지역 특성 등을

고려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’ 등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. [따로붙임 1. 관련 법령 및 조례]

- 사전검토의 주체가 강남구의회 의장으로 정하고 있어 사전검토는 국내 교류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국의 업무라 할 것임.
-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지원팀에서는 의안 발의 전에 ‘강남구의회-연천군의회 친선결연 체결자료’를 제출하기는 했으나, 자료 내용에 구체성이 부족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[따로붙임 2. 강남구의회-연천군의회 친선결연 체결 검토자료]

-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와의 친선결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풍부한 도시인프라를 갖춘 강남구와 강남구 면적의 약 17배에 이르는 농업 중심의 연천군이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, 이를 지방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.
- 다만, 친선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¹⁾ 경과된 것으로 보이는데, 무분별한 교류협력 추진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존중하여 향후에는 상호 교류 여건을 충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1) 조례에는 제5조(사전교류)에서 사전교류를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고 하고 있음.

[따로붙임 1. 관련 법령 및 조례]

【지방자치법】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【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】

제4조(사전검토)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인구, 면적,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
2. 산업,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
3.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
4.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
5. 역사적,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
6.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

제5조(사전교류) ① 의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(이하 “친선결연등”이라 한다)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.

② 의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.

강남구의회 - 연천군의회 친선결연 체결 검토자료

1. 검토배경

- 강남구의회는 경기도 연천군의회와의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체결 제안과 관련하여, 『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』에 따라 체결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고자 함

2. 제안이유

- 국내 지방의회 간 상호 교류를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며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 사례 공유와 창의적인 의정 활동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 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교류 협력을 제안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친선결연 대상 : 경기도 연천군 의회
- 협약 내용
 - 양 기초 의회간 우호 증진 및 상호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
 - 양 기초 의회의 행정·경제·산업·문화예술 등 다방면에 걸친 지속가능한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 도모

○ 교류 분야

구 분	내 용
의정 분야	○ 우수한 지방의회 사례 벤치마킹 및 의정 정보 공유
경제 분야	○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및 홍보 부스 연계
문화 분야	○ 예술·축제·공연 등 상호 홍보 및 관광자원 활성화 지원
주민자치 분야	○ 양 지자체 주민단체 등 친선 상호 교류
재난 분야	○ 재난, 재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상호 지원

○ 일반 현황(※2025년 기준)

구 분	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	경기도 연천군 의회
의정 구호	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되는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	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
면적	39.50 km^2	676.31 km^2
인구	556,492명	41,027명
재정규모	1조3,736억	6,693억원
의원정수	23명	7명
친선 교류	없음(최초)	없음(최초)

4. 사전 검토 분석

○ 기준 항목 : 『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』 제4조

연 번	기 준 항 목	검 토 내 용
1	인구, 면적, 행정·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	강남구는 인구 약 55만 명, 재정자립도 60% 이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능력을 보유한 도시형 자치구임. 반면 연천군은 인구 약 4만 명의 농촌지역으로 면적은 넓지만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음. 각자의 독자적인 지역여건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도시-농촌 간 상호 교류 필요성이 존재함.
2	산업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	강남구는 첨단산업, 의료관광, 문화콘텐츠 산업이 강점이며, 연천군은 접경지역 특성에 따른 안보·생태자원, 농업 인프라가 강점임. 각자의 가지는 고유한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적인 정책 방안 고려
3	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	양 기관은 동일한 기초의회로서 주민 대표기관이며,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의정 교류,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채널 운영이 가능함. 실질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이 기대됨.
4	교류협력을 통한 실익	강남구는 재정·행정 역량을, 연천군은 자연환경·농업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축제·관광 활성화, 특산물 판로 확대, 청소년 체험학습 등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.
5	역사적·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	연천군은 한탄강·임진강, DMZ 인근 지역 등 독특한 지리·역사 자원을 갖고 있으며, 강남구는 현대 문화의 중심지로서 상징성이 큼. 상이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 이해 및 문화적 다양성 공유에 적합함.
6	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	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는 도농 상생 모델로서 상호 보완적 협력구조를 구축할 수 있으며, 장기적으로 정책 세미나, 상임위원회 간 교류 등 제도적·지속적 협력 가능성이 높음.

5. 관련 법령

-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
- 연천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

6. 향후 계획

- 사전교류 실무협의(교류·협력 분야 및 친선결연 체결 일정 등)
- 강남구 의회-연천군 의회 친선결연 체결(의안 통과시 10월 예정)

7. 종합 의견

-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의 친선결연은 도시와 농촌의 상호 이해와 보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, 양 지역은 산업·문화·자원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이 높아 다양한 정책·행정 교류가 가능함.
특히 재정·행정 역량과 자연·농업 자원의 결합을 통해 관광, 특산물 유통, 주민 교류 등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, 장기적·지속적 협력관계 구축에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8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1.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. 끝.

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 (황영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8. 14.

발 의 자: 황영각·한윤수·강을석·
이동호·노애자·이호귀 의원
(이상 6인)

1. 제안이유

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을 통해 양 의회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, 의정·경제·문화·민간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두 지자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강남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 기초의회간 친선결연 체결
- 친선결연 협약서(안)

3. 제안경위 및 추진사항

- 2024. 8. 16 : 양 의회 의장 간 친선교류 강화 논의
- 2024. 11. 11 : 양 의회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 도모
- 2025. 3. 24 : 연천군의회 교류 관련 의향서 전달
- 2025. 6. 10: 구의회 의상단 회의에서 친선결연 추진 결정

4. 친선결연의 필요성

- 지방의회 운영의 정보 상호교환으로 자치역량 배양
- 의정, 경제, 사회, 문화, 청소년, 민간경제 교류 협력으로 유대 강화
- 도·농 상생 협력 체계 구축

5. 기대효과

- 양 의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우호관계 증진 및 도시 위상제고

6. 향후계획

- 지방의회와 교류 확대 친선결연 추진계획 수립
- 양 의회 간 친선 결연 협약(안) 조율 및 협의 조정
- 친선결연 협약식 사전 논의(강남구의의회⇔연천군의의회)
- 친선결연 협약식 체결

7. 협약서(안) : 붙임

- 강남구의회 · 연천군의회 -
상호 교류 협력에 관한 친선결연 협약서(안)

“강남구의회”와 “연천군의회”(이하 “협약기관”이라 한다.)는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협약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의 이익 추구하고 상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사항) 협약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.

1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
2. 기관 간 협력 활동을 통한 정보교환 및 상호 발전 방안 협의
3. 기관 간 공동이익을 위한 분야별 협력 추구
4. 그 밖에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3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,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.

제4조(협약의 변경 및 해석) 협약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하며, 본 협약서의 변경 및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 본 협약을 통해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 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는 협약 종료 후에도 같다.

제6조(기타)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.

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협약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. . .



강남구의회의장
이 호 귀



연천군의회의장
김 미 경